

재보험 운영규정

제 정 : 2009. 11. 27

1차 개정 : 2010. 7. 6

2차 개정 : 2011. 12.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역보험법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재보험 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보험(Reinsurance)”이라 함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계약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재보험자(Reinsurer)”라 함은 원보험자가 가입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보험중개사(Broker)”라 함은 출재사와 재보험자 사이에서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을 말한다.
4. “출재(Outward Reinsurance)”라 함은 출재사가 위험의 이전을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수재(Inward Reinsurance)”라 함은 재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재사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약(Treaty) 재보험”이라 함은 출재사와 재보험자간에 미리 출재대상 계약의 범위, 출재사 및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 처리방법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사전에 합의한 재보험계약으로써, 동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양측의 재보험 청약과 인수가 계속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7. “임의(Facultative) 재보험”이라 함은 출재사가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재보험 계약건마다 재보험자에게 청약하고, 재보험자는 그 계약의 인수여부

를 결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제 2 장 재 보 험

제4조(적용대상종목) 재보험 거래는 위험 분산 등을 위해 출재 또는 수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5조(재보험 거래방법) 재보험 거래는 특약재보험 또는 임의재보험 방법으로 한다.

제6조(재보험계약의 체결) 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재보험계약의 담보위험(가급적 원보험과 동일하여야 함)
2.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 등의 신용도
3. 계약의 범위, 책임한도액, 업무절차 등 재보험 계약조건

제7조(중개수수료의 지급) 재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보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보험 운용계획의 수립) ① 재보험업무 담당부서는 보유 및 예정 위험, 공사의 기금규모, 위험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재보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재보험 운용계획은 보험종목별, 담보위험별 또는 위험주체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내부통제) 재보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보험 출재(수재) 계획 및 연도말 최종정산 등 주요 정산 또는 청산
2. 재보험 운영과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재보험업무 취급인력의 관리) 재보험거래의 복잡성·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보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보험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